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5 | 2023.12.26 (2023.12.18~12.25)**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12.20. / 12.2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8~12.25)

HAPPY NEW YEAR

2024

甲辰年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 12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24년 총지출 규모는 656.9→656.6조원으로 △0.3조원 순감하였으며, 재정수지는 +0.4조원, 국가채무는 △0.4조원으로 개선하여 건전재정 기초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주로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 R&D 새만금 보완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 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들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하였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패권 경쟁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 양자 등 미래혁신 기술을 종합,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을 선별하여 향후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3년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3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적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개별 사업자가 자신이 입은 사적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므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간 일원화된 법률의 부재로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 및 통일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 바,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개선 정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23.12.8.)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2/28(목) 제411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방위】에서는 12/27(수) 10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장관 후보자(조태열), 【산자중기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안덕근)에 대한 인사청문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후위기특위】에서는 민간자문단 정책 제언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기획재정부) 8
-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 상정 안건 심의·의결(산업통상자원부) 15
-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금융위원회)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7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17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7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8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8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8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0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2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2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환경부) 2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2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25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26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6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금융위원회) 26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9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0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1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3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정거래위원회) 3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금융위원회) 3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3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3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 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 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 40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2인) 4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4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4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4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42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12.20 / 12. 21) [바로가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5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5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5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6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63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6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6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5
•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위원장)	6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67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등 10인)	6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8~12.25)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절차의 정지
- [방송통신(TMT)] AI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
- [지적재산권]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 [ESG] COP 28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조세] 공장의 지방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1,021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시킨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국회 의결 · 확정

- '24년 총지출 규모는 656.9→656.6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재정수지 +0.4조원, 국가채무 △0.4조원 개선→건전재정기조 견지
-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 R&D·새만금 보완 등 증액

2023-12-21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한 바,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 축소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기조가 더욱 강화됨

(조원, %)

	‘23년 본예산(A)	‘24년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정부안(B)	최종(C)		
총수입	625.7	612.1(△2.2)	612.2(△2.2)	+0.1	△13.5
총지출	638.7	656.9(+2.8)	656.6(+2.8)	△0.3	+17.9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58.2(△2.6)	△92.0(△3.9)	△91.6(△3.9)	+0.4	△33.4
국가채무 (GDP대비,%)	1,134.4(50.4)	1,196.2(51.0)	1,195.8(51.0)	△0.4	+61.4

2024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내용으로는

① '24년 총지출은 656.6조원 (정부안 대비 △0.3조원)

- 총지출은 정부안 656.9 → 최종 656.6조원으로 △0.3조원 감소
- * 총지출 기준 국회 심사단계에서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 유지
- 총수입은 정부안 612.1 → 최종 612.2조원으로 +0.1조원 증가

② 2024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9% (정부안 수준), 국가채무 GDP 대비 51.0% (정부안 수준)

-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92.0 → 최종 △91.6조원으로 +0.4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은 △3.9% 유지)
-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44.8 → 최종 △44.4조원으로 +0.4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은 △1.9% 유지)
- 국가채무는 정부안 1,196.2 → 최종 1,195.8조원으로 △0.4조원 감소 (GDP 대비 비율은 51.0% 유지)

< 2024년 재정운용 모습 >

(단위 : 조원, %)

	'23년	'24년		증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 수 입	625.7	612.1	612.2	+0.1	△13.5	△2.2
◇ 총 지 출	638.7	656.9	656.6	△0.3	+17.9	+2.8
◇ 관리재정수지	△58.2	△92.0	△91.6	+0.4	△33.4	-
(GDP대비, %)	(△2.6)	(△3.9)	(△3.9)	-	-	-
◇ 통합재정수지	△13.1	△44.8	△44.4	+0.4	△31.3	-
(GDP대비, %)	(△0.6)	(△1.9)	(△1.9)	-	-	-
◇ 국가채무	1,134.4	1,196.2	1,195.8	△0.4	+61.4	-
(GDP대비, %)	(50.4)	(51.0)	(51.0)	-	-	-

※ (참고) 분야별 자원 배분

(조원)

구 분	'23년	'24년 정부안(A)	'24년 최종(B)	증감 (B-A)
◆ 총지출	638.7	656.9 (+2.8%)	656.6 (+2.8%)	△0.3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242.9	-
2. 교 육	96.3	89.7	89.8	0.1
3. 문화·체육·관광	8.6	8.7	8.7	-
4. 환 경	12.2	12.6	12.5	△0.1
5. R&D	31.1	25.9	26.5	0.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28.0	0.7
7. SOC	25.0	26.1	26.4	0.3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25.4	-
9. 국 방	57.0	59.6	59.4	△0.2
10. 외교·통일	6.4	7.7	7.5	△0.2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24.4	0.1
12.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110.5	△0.8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됨**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하며,

또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8만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3만호) **일부를 한시지원**(+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288억원)키로 함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3년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 최대 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하고, he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 × 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7→5월)하고 **환급요건도 완화**(월 21회 → 15회 이상)되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천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분유: 월 8→9만원, 기저귀: 월 10→11만원)하였으며,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85억원)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20억원)키로 함

다음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용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하여,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천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용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키로 함

한편, **R&D분야**(+0.6조원)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하였고, **새만금 분야**(+0.3조원)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패권 경쟁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 양자 등 미래혁신 기술을 종합, 12대 분야·50개 중점기술을 선별

2023-12-20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함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함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임

< 12대 국가전략기술 · 50대 세부 중점기술 목록 >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효율적 학습 및 시인프라 고도화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유전자·세포 치료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전력반도체		감염병 백신·치료		안전·신뢰 AI
	반도체 첨단패키징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산업 활용·혁신 AI
	차세대 고성능 센서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차세대 통신	5G 고도화(5G-Adv)
이차전지	프리폼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해양	우주관측·센싱		6G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착륙·표면탐사		오픈랜(Open-RAN)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5G·6G 고효율 통신부품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해양자원탐사		5G·6G 위성통신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수소	수전해 수소생산	첨단로봇 제조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첨단 모빌리티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수소 저장·운송		로봇 자율이동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고난도 자율조작
	자율주행시스템	사이버 보안	데이터·AI 보안		인간·로봇 상호작용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양자	가상제조
차세대 원자력	전기·수소차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양자컴퓨팅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산업·가상융합 보안		양자통신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양자센싱

< 12대 국가전략기술·50대 중점기술 개요 >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 반도체· 디스플레이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④ 전력반도체	▪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2> 이차전지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전지제조 기술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향상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친환경 자원회수·재활용 관련 기술
<3> 첨단 모빌리티	⑬ 자율주행 시스템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⑭ 도심항공교통(UAM)	▪ 저소음·친환경 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⑮ 전기·수소차	▪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4> 차세대 원자력	⑩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 고안전(무한냉각, 사고저항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⑪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높은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부지·처분) 기술
<5> 첨단 바이오	⑫ 합성생물학	▪ 생명 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⑬ 유전자·세포 치료	▪ 유전자 결함보완·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⑭ 감염병 백신·치료	▪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
	⑮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개인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6> 우주항공· 해양	⑯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 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⑰ 우주 관측·센싱	▪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⑱ 달착륙·표면탐사	▪ 달착륙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 궤도설계·운명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
	⑲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⑳ 해양자원 탐사	▪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7> 수소	㉑ 수전해 수소생산	▪ 전기를 이용해 물(H ₂ O)을 분해하여 연료·전력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㉒ 수소 저장·운송	▪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극저온 액화(-253°C)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㉓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8> 사이버 보안	㉔ 데이터·AI 보안	▪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㉕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공급망 보안)	▪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㉖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㉗ 산업·가상융합 보안	▪ 정보보안·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적용하는 보안 기술

<9> 인공지능	③4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 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③5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인지·판단·추론)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③6 산업 활용·혁신 AI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③7 안전·신뢰 AI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10> 차세대 통신	③8 5G 고도화(5G-Adv)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 (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③9 6G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④0 오픈랜(Open-RAN)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
	④1 고효율 5G · 6G 통신부품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④2 5G · 6G 위성통신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11> 첨단로봇·제조	④3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④4 로봇 자율이동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④5 고난도 자율조작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④6 인간-로봇 상호작용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④7 가상 제조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
<12> 양자	④8 양자컴퓨팅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SW 기술
	④9 양자통신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⑤0 양자센싱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 상정 안건 심의·의결 -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2023-12-21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및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정부는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수요·지역주도 개발 촉진

-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민간투자 적기반영을 위한 수시지정 활성화
*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이내 관리(현재 271.4㎢)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현재)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기간 단축 또는 1년 내 연장, 10%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등 자체 변경 → (개선) 면적, 기간, 비용 등 자체 변경범위 확대

②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 유형별*로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지원 추진
* 글로벌 거점형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지역 거점형 : 충북, 대구경북, 동해안, 경기, 광주, 울산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간소화 추진** 등 지원책 마련
* 타 특구에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적으로 적용
**경자법 시행령에서 비자발급 절차, 체류자격·기간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 인력의 출입국 특례를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권한을 경자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간소화 추진

③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 거점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업 촉진, 해외 주요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신설 검토
- 복합기능*을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K-FEZ 브랜드 글로벌 홍보 강화
* 산업·관광 기능과 함께 스마트시스템과 그린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미래도시 지향

④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경자청의 사무권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추진
* 경자청의 역할을 기업활동 및 혁신성장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One-Stop 서비스 강화
- 중앙·지방 공동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및 청장협의회 등 협력 강화
* 경자단,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가 경자유역을 순회하며 경자청과 함께 입주기업 애로 해소

금융위원회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2024년 정책금융 총 212조원 공급, 5대 중점전략분야에 102조원+@ 집중 공급

2023-12-19

금융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한 바,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작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출범 후 1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수립함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수립함.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3년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3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 +@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하기로 함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구분	지원 목표	'23년	'24년 (증가율)
①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17.6조원 (12.8% ↑)
②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 · 경쟁력강화 지원	20.3조원	22.1조원 (8.8% ↑)
③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원	21.4조원 (4.0% ↑)
④유니콘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원	12.6조원 (39.5% ↑)
⑤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28.7조원 (8.9% ↑)

< 24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금융 공급 계획 >

5대 중점 전략분야 총 102조원	해당부문 및 지원규모(주요분야)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7.6조원)	- 반도체(3.6조원) - 이차전지(5.9조원) - 원전생태계(3.3조원)	- 디스플레이(1.1조원) - 미래차(3.8조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22.1조원)	- 바이오헬스(4.2조원) - 수소생태계(1.1조원) - ICT 디지털(3.4조원) - 항공우주 탄소소재(1.7조원) - 방위산업(3.8조원) - 국토교통(1.4조원) - 통신(5G)(0.3조원) 신규	- 나노소재(1.4조원) - 미디어콘텐츠(1.2조원) - 해양수산업(0.8조원) - 양자(0.1조원) - 농식품신산업(2.4조원) - 딥사이언스(0.2조원) 신규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21.4조원)	- 자동차부품산업(5.9조원) - 철강산업(3.7조원) - 항만장비(0.3조원) - 정유산업(1.6조원) - 산업적 위기대응(1.1조원)	- 조선산업(2.8조원) - 섬유산업(2.9조원) - 광학산업(0.4조원) - 플라스틱 · 시멘트(2.7조원)
유니콘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육성 (12.6조원)	- 우수 스타트업(0.6조원) - 우수IP보유기업(1.1조원) 신규 - 신산업 중견기업(0.3조원) 신규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 창업기업(0.02조원) 신규	- 우수 중견기업(1.8조원) - 지역 우수 중소기업(0.7조원) 신규 - 글로벌 강소기업(0.8조원) 신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8.7조원)	기계 전기산업(15.1조원)	경영애로 해소(13.6조원)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19 시행예정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1954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영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일반 금전채무의 한도를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29조제2항제1호, 제34조의8제5항, 제34조의9)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9 시행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평가방식이 원가평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약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9 시행
---------	---------------------------------	---------------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농수산물과 소비재 완제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 및 창고업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5호, 제3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91조제5항, 제93조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95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특허청장이나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준비금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준비금은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제9조의5제1항, 제28조의6)

산업통상자원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01 시행예정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의 급증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등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은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심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하며,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9조제1항제11호 삭제, 제9조제1항제12호 삭제, 제19조제2항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1-01 시행

실용신안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의 급증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등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은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 인한 심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기간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하며,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제12호 삭제, 제5조제13호 삭제,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7조제2항제4호 등)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

(다만, 제6조제11호 및 제13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우선권 주장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간을 연장한 사항을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10호라목, 제10조제3항제10호라목)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

(다만,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종전에 비해 기술적 안정성과 호환성이 개선된 3D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면 식별항목표시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3조제1항, 제34조, 제68조제3항, 제102조 삭제 등)

산업통상자원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01 시행예정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의 급증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12조제8호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01 시행예정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출처에 관한 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며, 특허출원 우선심사가 시급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를 우선심사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등)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04 시행예정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변경신고와 지위승계 신고의 절차와 서식 및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6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 신설, 제46조제2항 등)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01-01 시행예정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변경주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변경허가’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의 증가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등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4조제2항, 제36조, 별표6 제2호나목 등)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9 시행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을 완화하며,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 (제3조제1호의2 신설, 제26조제2항)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 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제20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더라도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및 재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완화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면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 협의 내용에 반영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의 추가 및 정비 (별표 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 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함

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가 및 정비 (별표 3 제2호 및 제3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⑥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 (별표 5의2)**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24-01-01 시행예정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공포, 2024.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순환원료의 정의 신설 (제2조)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순환원료로 정의함

② 순환자원의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5조)

- 순환자원 지정·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발생·처리·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순환자원의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③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등으로 정하는 등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정함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 (별표 4 제2호 및 제4호)

-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던 것을 600억원 미만인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납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01 시행예정

건설근로자의 근로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 및 퇴직공제금이 결정되는 퇴직공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전자카드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사업장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업장에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카드 제도의 조기 안착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4항 등)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9 시행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9조의2, 제9조의3)

고용노동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9 시행

생활숙박시설의 청약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300실 이상인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인터넷을 활용한 모집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제7조의2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 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투자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 (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7조제2호의2 신설)

-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③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투자의무 (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제35조의2 신설)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⑤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 (제44조의2 신설)

-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공포, 12. 21.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차입 또는 청산 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게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벤처투자조합 등록 이전의 결성계획 제출 절차를 폐지하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의2 신설, 제7조제1호마목 신설,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등)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1 시행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히 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2조의2 신설, 제41조제1항제3호, 제44조제3항제9호, 제6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03-20 시행예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제1호나목, 별표 제2호다목)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

2023-12-21 시행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2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알리도록 하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8조의4제2항 제5호 신설, 제8조의8)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12 시행예정
(다만, 제2조제4호 · 제5호 · 제9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3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제2조제9호, 제2조제9호의2 신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②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제5조의2 신설)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금전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하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와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③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 (제5조의3 신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변경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④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제5조의4 신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이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완료일까지 보유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9 시행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다른 대상회사와 기준이 중복되는 코스닥시장의 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을 제외하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필요한 사항의 적용 시기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중 급격한 자산총액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2년간 유예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9조제3호 신설, 제44조제2항제15호)

* 투자주의 환기종목: 최근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경우 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3.12.19. ~2024.01.29.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제5조)
-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7조)
- ③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④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9조)
- ⑤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20조 제23조)
- ⑥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24조 제27조)
- ⑦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8조 제35조)
- ⑧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 (안 제36조 제52조)
- ⑨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53조 제64조)

- 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 (안 제65조 제67조)
- ⑪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68조 제69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tel:044-203-3907) (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2023.12.19.
~2024.01.29.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제4조)
- ②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및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7조)
- ③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상호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함 (안 제8조 제9조)
- ④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 및 운영 계획 미이행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11조)
- 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개선사항 통보 및 그 내용, 이의신청서 서식 등을 구체화 (안 제12조~18조)
- ⑥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 (안 제19조)
- ⑦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 (안 제20조)
- ⑧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22조)
- ⑨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27조)
- ⑩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안 제28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tel:044-203-3907) (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외국투자가 등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 및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3항, 제6항)**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및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②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권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4항, 제7항)**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단계에서, 외국투자가 등에게 자료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 제고
- ③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유 추가 및 타법령상 유사절차와의 관계 설정 (안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항)**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3.7월)을 반영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의 안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상 심의·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외촉법상 안보심의 제도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외국투자가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 ④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및 사실조사 근거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5항, 제7항)**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및 사실조사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화
- 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전확인 절차 실효성 제고 (안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안보심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확인 절차의 회신기한(30일)을 규정하여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 합리화 (안 제5조의2 제6항, 제8항)**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최종 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절차별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토 과정을 내실화하되, 총 심의기한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투자가 등의 부담 최소화
- ⑦ **공표의무 삭제 등 (안 제5조 제5항, 제5조의2 제10항, 제12항)**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결정의 대외 공표의무 삭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등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전화: 044-203-4074, 팩스: 044-203-471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22.
~2024.01.31.

제한된 전력공급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안 제5조의5 제5호의3 신설)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08, 팩스: 044-203-4756\)](tel:044-203-390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22.
~2024.01.31.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력수전예정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에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서명칸” 추가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② 동법 시행령 ‘제5조의4’가 ‘제5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중 ‘영 제5조의4제5호’를 ‘영 제5조의5제5호’로 변경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08, 팩스: 044-203-4756\)](tel:044-203-3908)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21.
~2024.01.30.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2024. 2. 17. 시행)에 따라, 개수명령 미이행 시 처분기준 마련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수입업 허가 면제 조항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등 면제 대상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26조의2)
 -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업허가 등의 면제가 의료기기법에 근거하고 있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조·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 근거법령을 명시하고자 함
- ② 개수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안 별표 1)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됨에 따라 개수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39 팩스: 043-719-373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21.
~2024.01.31.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서류·현장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대상을 외화획득용 원료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의 정밀·무작위 표본검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안 제2조, 제11조, 제27조, 별표 5)
 - 잔류물질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된 사항 규정

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검사 및 실태조사 방법 등 규정 (안 제44조의6, 제44조의 7 신설)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검사방법 및 절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총리령으로 위임된 사항 규정 필요

③ 수입신고 면제 규정 명확화 (안 별표 8의2)

- 시행규칙 [별표 8의2] 규정은 수입신고 면제대상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으로 신고 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가 일부 불명확

④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안 별표 9)

-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요구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추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8, 팩스: 043-719-215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23.12.20.
~2024.01.29.

현행 법체계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적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개별 사업자가 자신이 입은 사적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므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이며,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음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의 부재로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 및 통일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괄 정비 (안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

- 현행 공정거래법에 미비되어 있던 조정원 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 (안 제6조)

- 피해구제, 분쟁의 예방 등과 관련한 업무 등을 조정원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원에게 능동적 역할을 부여함

③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괄 정비 (안 제14조)

- 보궐 조정위원의 임기를 기존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위원의 자격·임기·연임 규정 등을 정비함

③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괄 정비 (안 제14조)

- 보궐 조정위원의 임기를 기존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위원의 자격·임기·연임 규정 등을 정비함

④ 소회의 확대 (안 제16조)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 분야에도 다른 5개 분야에서와 같이 소회의 제도를 도입함

⑤ 조정절차 각하 사유 통일 (안 제21조)

- 하도급·약관 분야 분쟁조정の場合에도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절차 각하 사유를 통일함

⑥ 약관 분야 분쟁조정 관련 누락 사항 보완 (안 제21조, 제25조, 제27조)

-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조정절차 중 공정위의 시정조치 중단' 규정을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도 적용하고, 약관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5개 분야 분쟁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관 분야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의 합의사항 이행 의무', '이행결과 보고 의무', '합의사항 이행 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 규정을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도 적용하는 한편, 약관 분야 피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5개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규정을 약관 분야에도 적용함

⑦ 사실관계 조사 근거 규정 보완 (안 제22조제2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쟁당사자 외 분쟁조정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⑧ 감정·자문 제도 신설 (안 제22조제3항)

-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⑨ 간이조정절차 신설 (안 제23조)

-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절차를 도입함

⑩ 조정절차 종료 사유 통일 (안 제24조)

- 각 법률마다 다소 상이하였던 조정절차 종료 사유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통일함

⑪ 집단분쟁조정 제도 확대 (안 제28조부터 제31조)

- 현재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만 도입·운영 중인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6개 분쟁조정 전분야로 확대함

⑫ 중재 제도 신설 (안 제32조, 제33조)

-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외에 중재 제도를 신설하여 도입함

⑬ 비용 부담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6조)

- 감정·자문 제도의 도입과 중재 제도 신설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⑭ 비밀엄수 위반시 법정형 통일 (안 제37조)

- 각 법률마다 다소 상이했던 비밀엄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전화: 044-200-4303, 팩스: 044-200-4342\)](tel:044-200-4303)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3.12.18.
~12.2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23.12.8.)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 (안 제2조)

-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②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 (안 제3조)

- 포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③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④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 (안 제7조)

-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⑤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⑥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 (안 제12조)**

-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⑦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 (안 제13조)**

-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종류·성격 및 범위,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⑧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19조 및 별표1)**

- 시정조치 수단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2-2100-2922, 팩스: 02-2100-2929\)](tel:02-2100-2922)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2023-12-18 발의
---------	---	---------------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정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내지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의 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 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2023-12-19 발의
-------	--	---------------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12-22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2023-12-20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중소·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4.5%에 달하여 정보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도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3-12-22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제76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2023-12-20 발의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2023-12-21 발의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1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2023-12-18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판례는 ‘경영상 필요’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유임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그러나 최근 외국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경영상 곤란을 이유로 경영상 문제점이 없는 한국법인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 실시 여부나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 근로자대표 등의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안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사유·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3-12-20 발의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 컵·접시·용기·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21년 말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1월 시행)에 따라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1회용 빨대가 추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고,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존의 1회용 빨대를 종이빨대 등으로 교체하고 있음

그러나 연하(삼김) 곤란이 있거나 노령·질병으로 인하여 종이빨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시 음료 취식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또는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고령자·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1회용품 사용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2023-12-20 발의

현행법에서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4제2항·제11조의5제1항제3호·제11조의6제2항)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12.19 / 12.2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 부의안건 요지

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법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공적기능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행법에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의 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감사반 등 개인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회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사무와 관련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조회 및 회보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확립 (안 제1조의2 신설)

- 공인회계사의 법적사명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함.

②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 마련 (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52조)

-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③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안 제26조제2항)

- 다수의 회계법인 설립 유도를 통한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 및 업무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함

④ 일부 직무정지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안 제26조제3항)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됨. 이에,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⑤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개선 (안 제34조)

-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두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안 제32조의10제1항)
-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제도를 연장 실시함 (안 제38조의2 신설)
- ③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함 (안 제83조제3항 등)
- ④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근거를 두고, 통지 주체 및 통지 유예 사유 등을 규정함 (안 제83조의2 신설)
- 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근거를 둠 (안 제83조의3 신설)
- ⑥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시정 요구 등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관리·감독 근거규정을 둠 (안 제83조의4 신설)
- ⑦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안 제104조제6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 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다만 해당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 (안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제50조의8 등)
- ②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7 신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CI를 일괄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CI 이용기관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 (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등)
- ④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4호의2 신설 등)
- ⑤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 (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 (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외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을 보수·보강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26조제1항).
- ②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안 제28조의2 신설)
-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9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5조제1항제3호).

한편, 최근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규정을 두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본격적 확산으로 택배·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2항 및 제19조의4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함 (안 제2조 제3호나목)
- ②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③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 ④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치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⑤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51조제1항)
- 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안 제19조의4 신설)
- ⑦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안 제38조제2항 신설)

※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2.21.) 심의안건 요지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안 제12조제2호사목)

-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②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안 제12조제3호마목·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③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 (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④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제6항)

-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 ·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⑥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 상향 (안 제59조의4제8항)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⑦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 (안 제81조의11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⑧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 (안 제156조의9 신설)

-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 (안 제42조의3제1항제3호)

-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②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안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 현행 제48조제11항제2호 삭제)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③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 (안 제53조의2 신설)

-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안 제71조제2항제2호)

-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 (안 제8조제9항)

-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함

②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제1항)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③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안 제42조제1항)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④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46조)

-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⑤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안 제60조제1항)

-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⑥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 (안 제60조제4항)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⑦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 (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6호, 같은 표 제16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3항, 안 제4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②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농어업인을 추가 (안 제13조제2항 신설)

- 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③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2 신설)

-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보정이자의 기산일을 「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 날¹⁾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신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하여 부족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보정이자의 적용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보정이자 부담을 완화함
-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통통시장 사용분과 영화·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안 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 제25조의6제1항, 안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②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 제1항 및 제3항)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③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 (안 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④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안 제91조의20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 (안 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⑤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96조의3제1항)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⑥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안 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안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⑦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안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⑧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안 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안 제104조의33 신설)**
외국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⑨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안 제105조의3 신설, 안 제106조제1항)**

-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안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안 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동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퍼센트)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 그룹의 모기업 소재지국 등에서 그 차이에 대한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 (안 제26조의2제6항제7호 신설)**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 (안 제28조제1항제4호)**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 ③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 (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
 -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④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 (안 제49조제1항제2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 (안 제59조의2제1항)**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⑥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1조의13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방법·절차 등 규정 (안 제43조제3항,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 점유의 방식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등에 통지함으로써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②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 (안 제57조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함
- ③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 (안 제84조제2항 신설)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10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④ 차액납부 방식의 대금납부 제도 도입 (안 제84조의2 신설 등)
 -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소득세법」 개정에 맞추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불성실 가산세 시행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정비 (안 제75조의7)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불성실 가산세 관련 조문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기간을 연장함

②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의 요건 유지 (안 제18조의4 및 제57조제5항)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해외 자원확보 효과가 불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안 제36조제6항)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계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계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③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 (안 제51조의2 신설)

- 우리나라와 계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 (안 제54조제1호 및 제2호)

-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안 제58조제3항 및 제91조제4항 신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⑥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 (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1호 전단의 개정규정)

-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유로 이상)’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정부기업과 그 연결된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⑦ 고정사업장 정의 정비 (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⑧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 (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⑩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 신설)

-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⑪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 (안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6조)

-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와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 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세부와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 (안 제21조제3항 신설)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 (안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③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안 제56조의2 신설)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④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 확대 (안 제116조의2제1항)

- 관세포탈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

⑤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안 제116조의6 신설)

-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⑥ 보세사 시험의 결격사유 조정 (안 제165조제1항)

-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보세사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⑦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신설 (안 제220조의2 신설)

-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⑧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 마련 (안 제224조제1항)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⑨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 (안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종전에는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아닌 물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

⑩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 폐지 (현행 제247조제3항 삭제)

-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장소가 지정장치장이거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⑪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안 제264조의11 신설 및 안 제266조의2 신설)

-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⑫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안 제277조)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반출 제한 및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이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류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27조의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함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2)
-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58조의2 등)
-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신설함 (안 제58조의3)
- ④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 ⑤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까지)
-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 ⑦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두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안 제32조의10제1항).
-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제도를 연장 실시함(안 제38조의2 신설)
- ③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함 (안 제83조제3항 등)
- ④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근거를 두고, 통지 주체 및 통지 유예 사유 등을 규정함 (안 제83조의2 신설)
- 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근거를 둠 (안 제83조의3 신설)
- ⑥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시정 요구 등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관리·감독 근거규정을 둠 (안 제83조의4 신설)
- ⑦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안 제104조제6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들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및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금 차별 지급 등을 이유로 사전승낙이 철회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다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고객 간 거래를 매개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여 사전승낙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환경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철회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동통신사가 행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가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사업재편제도는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지원하였으며, 2만여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의 안정적 사업재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원범위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사업재편 유형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체계화함 (안 제2조 및 제4조)

- ② 원활한 사업재편지원을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의2 신설)
- ③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 ④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 (안 제17조)
- ⑤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⑥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안 제26조의2)
- ⑦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6조의2)
- ⑧ 안정적인 제도운동을 위해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 (법률 제14030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위원장)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함께 ‘디지털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되어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 (안 제2조·제3조)

- ②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위원회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제7조)
- ③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④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⑤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9조 및 제30조)
- ⑥ 디지털의료 · 건강지원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디지털의료 · 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 · 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⑦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0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변경보고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 이후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작 당시에 발생한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53조의2 신설)
- ② 자동차 제작 전에 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제작 이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 (안 제48조)
- ③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6조)
- ④ 현행법에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91조제4호 신설 및 제91조제4호의2)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선거용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의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이루어짐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 (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고,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28(목) 14:00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2/27(수) 10:00	- 법안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	12/27(수) 10:00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외통위	전체회의	12/28(목) 10:00	- 외교부장관 후보자(조태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등
행안위	전체회의	12/28(목) 10:00	- 공청회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자 의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2/26(화) 15:3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 등
	산업특허소위	12/28(목) 09:30	- 법안 심사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12/28(목) 10:00	- 민간자문단 정책 제언 보고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26(화) 10:00	100세 시대, 새로운 세대구분과 함께하는 노년의 역할탐색 토론회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26(화) 14:00	2023 KBEPA 협회 5주년 기념식 및 블록체인정책포럼	박영순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26(화) 14:00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 국회 토론회 -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신현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26(화) 14:00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 배관망 공동 구축 포럼	주철현·하영제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28(목) 09:30	마약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8(목) 10:00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제4차 -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12/28(목)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 제20호 발간 -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국회사무처	
	12/27(수)	「금주의 서평」 제659호 발간 - 도서명 :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 저 자 : 최태현	국회도서관	
	12/26(화)	「NABO Focus」 제68호 발간 -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12/27(수)	「NABO Focus」 제69호 발간 -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주요 내용		
	12/27(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8(월) 10:00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	김미애 · 한정애 ·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8(월) 14:00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19(화) 14:00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성과보고회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9(화) 14:00	한국 골프산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20(수) 10:00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김예지 · 윤재옥 · 김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20(수) 15:00	학생 건강증진과 법률 이행을 위한 보건과 추진 방안 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사)보건교육포럼	의원회관 5간담회실
	12/21(목) 10:00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3차 -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21(목) 10:00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동만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12/18(월)	「팩트북」 제107호 발간 - 재난안전관리	국회도서관	
	12/20(수)	「금주의 서평」 제658호 발간 - 도서명 : 자연에 이름 붙이기 - 저 자 : 캐럴 계속 윤		
	12/20(수)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2/21(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5호 발간		
	12/22(금)	「NABO 경제동향」 제40호(2023년 제6호) 발간		
	12/19(화) 16:00	「NARS Brief」 제29호 발간 - 민사와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8~12.2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19(화)	건설/부동산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절차의 정지
12/21(목)	방송통신(TMT)	AI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
12/21(목)	지적재산권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12/22(금)	ESG	COP 28 주요 내용과 시사점
12/22(금)	조세	공장의 지방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1,021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시킨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